

대전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2142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희

변론 종결2024. 9. 24.

판결 선고2024. 11. 2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 3. 26.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7,020,8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20,8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B과 사이에서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18.부터 2014. 4.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초하여 2013. 4. 18. 기업은행 대전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한 2014. 4. 17.(이후 2020. 4. 10.로 변경)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은, B이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3호와 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대위변제수수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연 8%)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7. 13.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9. 11. 4. 소외 은행에 41,145,5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23. 3. 28.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원금 잔액 40,905,105원, 대지급금 103,341원, 미수손해금 11,126,241원 합계 52,134,687원이다.

라. 피고는 B의 동생이다. B과 피고의 어머니 C이 사망하자, C의 상속인들은 2019. 3. 26.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9. 27. 접수 제 825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상속인은 B과 피고를 포함하여 자녀 5명이었다.

마. B은 2019. 3. 26. 당시 건설기계 시가는 합계 377,500,000원, 시가 14,950,000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23,766,04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중소기업은행	50,000,000	갑 제4, 5호증
D조합	107,605,377	갑 제13호증
북대전세무서	55,290,310	갑 제19호증(2019년 4월 고지분 제외)
서대전세무서	9,198,980	갑 제20호증(2019. 3. 26. 기준 액수)
(차량번호 1 생략)	48,897,451	갑 제18호증(B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한 채무)
(차량번호 2 생략)	43,583,394	
(차량번호 3 생략)	39,276,374	
(차량번호 4 생략)	43,507,988	
(차량번호 5 생략)	39,740,152	
(차량번호 6 생략)	86,666,015	
(차량번호 7 생략)		
합계	523,766,041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E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2021. 7. 21. 확정일자를 받았고(임대차보증금2,000,000원), F도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2022. 9. 14. 확정일자를 받았다(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 13,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3. 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와 B 사이에서 구상금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B은 2019. 7. 13. 이자연체로 최초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근접한 시일 내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B과 피고 사이에 2019. 3. 26.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 상속분인 1/5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이 건설기계와 자동차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극재산이 건설기계와 자동차 등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의 소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임차인 2명이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고, 수익자인 피고가 위 임차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를 회복하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1. 5.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486,815,950원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2019. 3. 26. 기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107,605,377원인바(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1. 10.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99,014,134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위 금액만을 공제하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 위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75,842,114원 $[(486,815,950\text{원} - 107,605,377\text{원}) \times 1/5\text{지분}]$, 계산 결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2,134,68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잔액인 40,905,105원에 대하여 2023. 3.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9. 24.까지 원고가 정한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서 57,020,885원 $[= 52,134,687\text{원} + 4,886,198\text{원}(=40,905,105\text{원} \times \text{연 } 8\% \times (1 + 180/365))]$ 이고, 이 돈이 위에서 인정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를 넘지 않음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57,020,8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세진

별지